

제412회 임시회
'23. 10. 17.(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
폐지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안치영 의원 등 7명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3년 10월 4일

○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4일

3. 제안사유

- 「충청북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」는 충청북도 또는 충청북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되는 증인, 참고인,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
-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에 대한 실비는 「행정소송법」 제8조, 「민사소송법」 제116조, 「민사소송규칙」 제19조, 「민사소송비용규칙」 제3조, 제3조의2에 지급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「충청북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」 폐지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-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에 대한 실비는 「행정소송법」 제8조, 「민사소송법」 제116조, 「민사소송규칙」 제19조, 「민사소송비용규칙」 제3조, 제3조의2에 지급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이 조례는 충청북도 또는 충청북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임되는 증인, 참고인, 감정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등은 「민사소송규칙」 제77조에 따라 법원에 비용을 예납하고 있으며,
-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에 대한 실비는 「행정소송법」 제8조, 「민사소송법」 제116조, 「민사소송규칙」 제19조, 「민사소송비용규칙」 제3조, 제3조의2에 지급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조례의 규정사항인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에 대한 실비는 「행정소송법」 제8조, 「민사소송법」 제116조, 「민사소송규칙」 제19조, 「민사소송비용규칙」 제3조, 제3조의2에 지급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,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